

#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7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94. . .

제 출 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14317호94.7.6)으로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
-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
- 증인과 증언에 관한 규정등을 신설하기 위함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감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 (안 제 2조)
- 나.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의 세분화 (안 제5조)
- 다.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에 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하고 감사실시방법 등 명시 (안 제6조, 제11조)
- 라. 의회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불출석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거부시 과태료 규정 신설 (안 제9조)
- 마. 증인과 증언에 관한 조항 신설 (안 제9조)
- 바.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 신설 (안 제10조)
- 사. 대리출석, 답변의 통지조항 신설 (안 제12조)
- 아.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선서서 신설 (안 별표1)

## 3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6조
-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2